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기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 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 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국세청, 기업 지원체계 신설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 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 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 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 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 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한국의 경우 필라 1은 국제합의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필라2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경우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 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 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 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 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 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 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 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 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 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 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 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 과세 · 공제 · 감면 ·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소득세 50%) 적용 기간도 10년으로 종전의 두 배나 늘어났다.

2024 · 01 · 10 www.eAnSe.com 13